

부천시 기초예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3일 김승동·오명근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8) 상정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8)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승 동 의원)

가. 제안이유

- 문화도시를 자임하는 부천시가 6대 문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정작 모든 문화사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 지나치게 열악하여 기초 예술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불만이 팽배해 있음.
-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도시 부천의 긍지를 가지고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튼튼한 문화 도시로 가는 기반을 다질 필요성이 있음.
-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공공부문에서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를 위한 뒷받침이 필요함.

나. 주요골자

- 기초예술과 관련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
- 연간 계획의 수립과 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함.

(안 제4조, 제5조)

- “예술인의 날”을 정하여 예술인들의 사기양양과 창작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민간부문의 기초예술 진흥 동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안 제7조, 제8조)
- 지원을 받는 예술인들의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초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함으로써 탄탄한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예술”이라함은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사진, 국악 등 비상업적 성격을 띤 예술을 말한다.
2. “기초예술인”이라함은 위 제1호의 기초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3. “기초예술진흥”이라함은 기초예술이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한다.
4. “메세나”라 함은 커다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진흥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초예술의 교육이나 창작, 발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2. 기초예술에 대한 예술인과 시민 등의 욕구 조사사업
3. 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행·재정지원 사업
4. 기초예술 정책의 평가분석 사업
5. 기타 기초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익년도 기초예술진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회 등) 시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예술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보고회를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매년 5월 중 하루를 ‘부천시 예술인의 날’로 지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시상
2.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예술인들의 창작발표회나 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 조성) ① 시장은 기초예술 진흥과 시민들의 폭넓은 예술 향유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기초예술진흥 사업에 후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양에 힘쓴다.

② 위 제1호의 사업에 후원,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 시장은 위 제6조의 활발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하여 이를 매개하고 지원할 “부천시 메세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기초예술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539호
의결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발의년월일 : 2009. 11. 23.

발의자 : 김승동·오명근
의원등15인

1. 제안이유

- 가. 문화도시를 자임하는 부천시가 6대 문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정작 모든 문화사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 지나치게 열악하여 기초예술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불만이 팽배해 있음.
- 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도시 부천의 긍지를 가지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튼튼한 문화도시로 가는 기반을 다질 필요성이 있음.
- 다.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공공부문에서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기초예술과 관련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나.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
- 다. 연간 계획의 수립과 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함.
(안 제4조, 제5조)
- 다. “예술인의 날”을 정하여 예술인들의 사기양양과 창작의지를

복돋울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민간부문의 기초예술 진흥 동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안 제7조, 제8조)

마. 지원을 받는 예술인들의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사항 1부.

나. 기타 참고자료 1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초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함으로써 탄탄한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예술”이라 함은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사진, 국악 등 비상업적 성격을 띤 예술을 말한다.
2. “기초예술인”이라 함은 위 제1호의 기초예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3. “기초예술진흥”이라 함은 기초예술이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한다.
4. “메세나”라 함은 커다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진흥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초예술의 교육이나 창작, 발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2. 기초예술에 대한 예술인과 시민 등의 욕구 조사사업
3. 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행·재정지원 사업
4. 기초예술 정책의 평가분석 사업
5. 기타 기초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익년도 기초예술진흥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회 등) 시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예술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보고회를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매년 5월 중 하루를 ‘부천시 예술인의 날’로 지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시상
2.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예술인들의 창작발표회나 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 조성) ① 시장은 기초예술 진흥과 시민들의 폭넓은 예술 향유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기초예술진흥 사업에 후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양에 힘쓴다.

② 위 제1호의 사업에 후원,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 시장은 위 제6조의 활발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하여 이를 매개하고 지원할 “부천시 메세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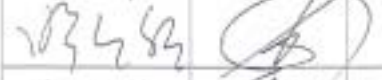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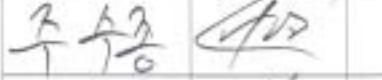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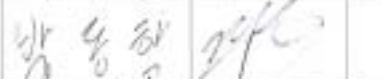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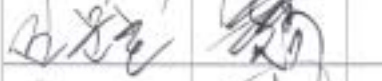





□ 법령 관련 용어

○ 메세나

커다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이러한 활동.

메세나는 고대 로마의 외교관이었던 가이우스 마이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다. 마이케나스는 베르길리우스·호라티우스 등의 문인들을 후원했던 돈 많은 후원자였는데, 지금은 예술 후원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메세나는 이타적인 목적에서 문화 및 사회 분야를 지원하는 것으로, 좋은 일을 하고 만족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이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메세나 활동의 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있고, 기업에서 내는 기부금 또는 성금은 메세나의 발달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출처 : 브리टे니커 사전>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 발의 찬성 의원 서명부

의원명	서명	비고	의원명	서명	비고
신석환					
박노영					
주수용					
백동환					
김희주					
이성호					
신재호					
안종국					
신호진					
오세진					
홍재					
한성제					
이영수	